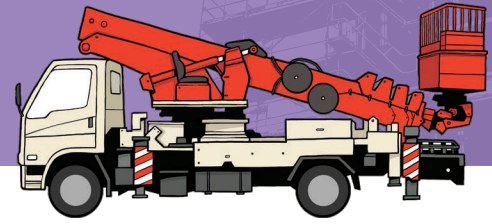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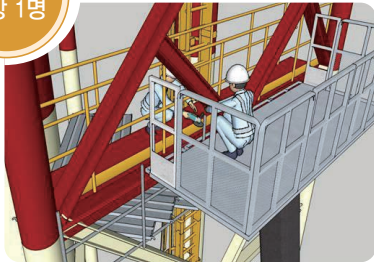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안전난간 해체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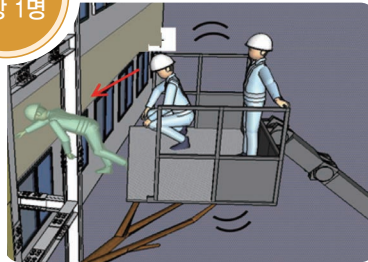
중대재해 발생현황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최근 6년간 총 재해 건수는 55건(사망 65명, 부상 16명)
그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재해 발생 건수는 총 22건(사망 22명)으로 약 40% 차지

2019. 1.
사망 1명



2018. 4.
사망 1명



2017. 9.
사망 1명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7]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42.(낙하 또는 추락방호조치)

가.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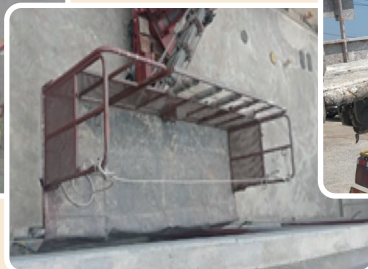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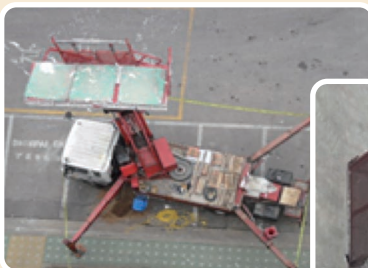
나. 안전난간은 작업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1.0m 이상 높이의 상부난간대와 0.1m 이상 높이의 발끝 막이판, 상부난간대나 발끝 막이판으로부터 0.55m 이내에 중간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안전난간은 가장 불리한 방향과 위치에서 0.5m 간격으로 작용하는 500N의 집최중 하중에 영구 변형 없이 견뎌야 한다.

라. 작업대는 난연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안전인증 기준 위반사례

안전난간(전면) 미설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안전작업지침

“안전난간을 해체하지 마세요”



1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을
사용할 때에는
보호구 착용

▶ 보호구(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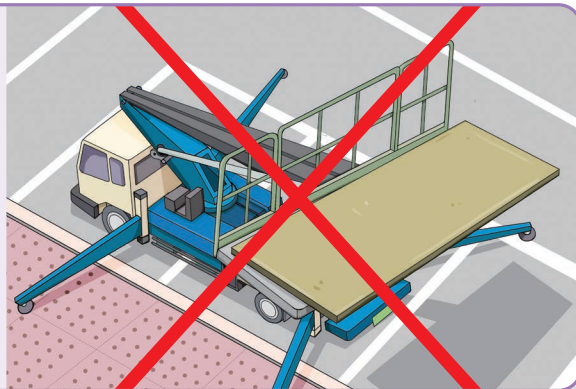
※ 안전대는 작업대에서 분리되지 않는
안전난간(후면부 등)에 설치



2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의
안전난간
해체 금지

▶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난간(전면, 측면 등)
해체 금지



3

안전난간의
일부 해체가
불가피한 작업

▶ 외장(석재, 유리) 부착작업 등 안전난간의 일부해체가 불가피한 작업의 경우

- ①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②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 ③ 조작자 이외의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휘·감독하에 작업 실시

